

2026년 「충남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충청남도과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(주), (재)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
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
위해 「충남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」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
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

(재)충남경제진흥원장

1. 모집개요

□ **모집규모** : 5업체 내외

※ 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될 수 있음

□ **신청기간** : 2026. 7. 23.(목) ~ 8. 14.(금) 14:00까지(기한 엄수)

※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□ **지원대상** : 「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
따른 소상공인으로 **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**

※ 지원대상 최종확인으 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(주)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.

□ **지원제외 대상**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)
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-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휴·폐업 사업자
-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

2. 추진일정

사업공고 신청서 접수	⇒	선정평가 진행 및 선정자 발표	⇒	사업수행	⇒	재기사업화 자금 지원
소상공인		선정평가위원회 (진흥원)		소상공인		소상공인 ↔ 진흥원
7월 ~ 8월		8월말		9월 ~ 11월		9월 ~ 11월

※ 위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

3. 지원내용

□ **재기사업화 자금** ※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(부가세 별도)

- 재기사업화 수행을 위한 사업화 자금*(100 ~ 600만원) 지원하며,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

* 사업신청시 지원이 필요한 항목 및 금액에 대한 **견적서(공급가액, 부가세 표기)** 함께 제출

- 선정 후 사업수행 완료 이후 진흥원으로 자금 집행 요청시 수행 결과 확인 및 현장검증 후 자금 지급
- 지원 세부 항목(세부항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 연락 요망)

지원분야	세부 항목
매장 모델링	• 사업장 소재지 상의接客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 소요 비용(도배, 조명, 장판 등) ※ 지원제외: 집기류(에어컨, 쇼케이스, 가전제품 및 자산 성격 물품 구매 등)
브랜드 개발	• CI·BI 디자인,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소요 비용 ※ 단, 사업수행 기간 내 결과물이 산출되어 제출할경우 가능
마케팅 홍보	▶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(간판, 현수막, 판촉물 등) ※ 포장용품, 포장지 등에 업체명 인쇄하여 활용(스티커 붙인정) ※ 판촉물: 공급가액 기준 개당 단가 1만원 이하, 총액 100만원 이하 집행가능 (유가증권, 상품권 구입 및 배포 불가) ※ 택배박스 제작시 공급가액 기준 총액 100만원 이하 집행가능 ※ 지원제외: 온라인 마케팅, 사업체 및 생산품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(업체명·BI·CI·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는 물품)
온라인 판로	▶ 판매제품의 사업기간 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소요 비용 - 사업기간(9월 ~ 11월) 내 진행되는 온라인 광고비, 배너광고 등 -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용 가능 ※ 지원제외: 단순 소모성 경비(포장, 배송비 등)

- 모니터링 : 경영유지 여부, 매출액 증감, 고용인원 변동 등 온라인 설문·모니터링 협조 필수

4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	
공통서류 (신청시 제출)	▪ <서식1> 사업신청서 ▪ <서식2> 사업계획서 ▪ <서식3>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 ▪ <서식4> 참여 협약서	https://www.cnsr.or.kr 서식 다운로드 → 작성 → 파일 업로드
	▪ 지방세 납세증명서 (2026. 7. 23.(목) 이후 발급분)	① 온라인 발급 : (지방세) 정부24 (www.gov.kr) : 위택스 (www.w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(지방세) 시/군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	▪ 매출액 확인서류(2025년) - (일반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-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(2026. 7. 23.(목) 이후 발급분)	① 온라인 발급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, 세무서
	▪ (공통) 사업자등록증명원 (2026. 7. 23.(목) 이후 발급분)	① 온라인 발급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세무서
	▪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2026. 7. 23.(목) 이후 발급분)	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
	▪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2026. 7. 23.(목) 이후 발급분)	① 온라인 발급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 ② 오프라인 발급 :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
	▪ 지원분야의 견적서(용역업체) 1부 (2026. 7. 23.(목) 이후 발급분) (공급가액, 부가세 별도 표기) *지원받고자 하는 분야가 여러개일 경우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, 사업신청시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(선정 후 견적서 내용 변경 불가함)	
지원금 증빙서류 (선정 후 정산시 제출)	▪ 재기지원사업 완료보고서(※선정자 대상 추후 제공)	
	▪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(신용카드 할부 불가)	
	▪ 공급자(용역업체) 사업자등록증	
	▪ 브랜드개발, 마케팅홍보, 온라인판로 수행 결과 내역서(※선정자 추후 안내)	
	▪ 지원분야 비교견적서(※신청시 제출한 견적서와 같은 항목에 대한 비교견적임)	
	▪ 지원금 지급처 통장사본	
※ 발급 서류 중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, 도장(또는 서명)이 되어 있는 서류만 유효 ※ 글자 또는 숫자 식별이 어려운 서류는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※ 견적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지원하며, 부가세는 지원 제외 ※ 지출 증빙이 없는 단순 현금거래시 지원 불가하며, 필요시 담당자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결정		

5. 사업 신청

- **신청기간** : 2026. 7. 23.(목) ~ 8. 14.(금), 14:00까지
 -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이 증가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**신청방법** :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(www.cnsp.or.kr) 신청
 - 통합지원시스템(www.cnsp.or.kr)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 가능하오니 반드시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선정 방법

- **평가 및 최종선정**
 - 선정평가위원회(외부전문가)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동점자 처리 : ❶업력(오래된 순), ❷월평균 매출액(낮은 순)
 - 평가항목 : 사업계획, 신청자역량, 사업화 아이디어 등

6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- **선정취소**
 - 신청서의 허위 작성, 직인(서명) 누락, 신청자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 - 신청대상 미확인(연락불능, 미숙지 등) 경우
 -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시공(제작)한 경우
 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진행한 경우
 - 사업 부실 등 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수행업체에 제작비 청구 등 부당거래가 발생한 경우
 - 사업수행 종료일(2026. 11. 30.(월))까지 진행된 건만 사업화자금 지원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지원분야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만 지원
(부가세액 미기재 시 합계금액에서 부가세액 별도 산정하여 제외)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(필수)
-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 불가
- 증빙서류 미비 시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진행할 수 있음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향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 제한됨
- ※ 지원제한 면제 : 천재지변, 재난·피해복구, 파산 등 그 외 사유의 경우 경제진흥원 담당자 판단에 따름
- 사업수행 종료 시점까지 영업 유지 필수(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현장 확인)이며, 영업 미유지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함
- 타 사업과 동일 항목 및 비용으로 중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함
- 사업수행 기간 내 휴·폐업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교부 및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및 민·형사 소송이 가능함

□ 문의처

- ☎ 충남경제진흥원(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) 보부상콜센터(041-424-4000)